제 730 호

1979. 9.1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편 집 : 문화공보관 김 인 동

전 화 75—7834

인 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 화 75—6090

시 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386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····· 3

제 387 호 :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실시계획변경인가 ····· 3

제 388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 , 도로) 일부변경시행허가 ····· 4

제 389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 , 도로) 실시계획인가 ····· 6

제 390 호 :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지적승인 ····· 7

제 391 호 :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및결정 ····· 7

제 392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실시계획인가 ····· 8

제 393 호 : 도시계획 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및시설 (공용의 청사) 변경지적승인 ····· 9

제 394 호 :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건축계획승인 ····· 10

제 395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····· 11

제 396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및변경 ····· 12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397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 ····· 12
제 398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····· 14
제 399 호 :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지적승인 ····· 15
제 400 호 :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청사) 결정및지적승인 ····· 16
제 401 호 : 광견병예방주사실시 ····· 17

◎ 공 고

제 295 호 :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지정공고 ····· 17
제 296 호 : 동청사위치변경공고 ····· 17
제 297 호 :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실시계획공람공고 ····· 18
제 298 호 :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실시계획공람공고 ····· 19
제 299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완료공고 ····· 19
제 302 호 :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건축계획및관리처분계획공람
공고 ····· 20
제 303 호 :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지정공고 ····· 21
제 305 호 :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····· 21
제 306 호 :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····· 21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86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 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1 호 (79.4 25)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 3.16) 로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 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8. .
서 울 특 별 시 장

o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조서

구 분	등 급	류 별	번 호	폭 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고
신 설	소 로	2	1	8 미터	110미터	내곡동산 112	내곡동산 12	
〃	〃	2	2	8 〃	1,240 〃	내곡동산 112	내곡동산 12	

별첨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87 호

도시계획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실시계획변경인가

1 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0 호 (79.6. 25) 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된 구기동 도로 및 외교관공관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26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 16)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함.

2 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공시송달할 것임.

3 .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. 4.
서 울 특 별 시 장

1 . 사업장위치 : 종로구구기동 158 번지 일대

2 . 사업명칭 : 구기동외교관공관단지 조성사업

3 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4 .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: 79. 6 -79.12.

5. 변경내용 :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단지 50,000평방미터중 6,900평방미터를 제척함.
6. 공사구역에서 제척되는 재산의 표시 : 별첨재산조서

인 가 증

1. 사업시행의 위치 : 서울시종로구 구기동158번지일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구기동 외교관공관단지 조성사업
3. 사업의 규모 : 단지 43,100평방미터 (도로: B = 12미터 L = 260 미터)
4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사업인가번호 : 서울특별시고시제 387 호
6. 사업기간 : 79. 6. - 79.12.
7. 기히 인가된 공사구역중 제척되는 토지조서 : 별첨

위와 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제 25조 및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.

1979. 9. 4.
서 울 특 별 시 장

(인가조건)
1. 사업실시 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어야 한다.
2. 별첨 계략 설계도서 (평면도) 에 의하여 시공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토 지 조 서 (제 척)

순번	소재지		지목	면적 (m^2)	소유자		비고
	동	지번			주소	성명	
1	구기동	146-1	전	6,576	종로구신교동 6-19	백귀남	구기동146-1(전) 9,418m^2중일부제척
2	〃	147	대	324	〃	〃	제 척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88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·도로) 일부변경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7 호 (79. 5.19) 로 시설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2 호 (79.7.16) 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사업 (학교·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 3.16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, 도시정비과 및 영파학원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. 4.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강남구성내동 102-4 번지 일대
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
도시계획사업 (학교·도로) 일부 변경 (영파여자중고등학교)
3.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:
서울특별시강남구성내동
학교법인 영파학원 이사장 심태진
4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
A = 23,769 ㎡ (7,190 평)
(기정 15,372 ㎡)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가. 착수년월일 : 착공일로부터 즉시
나. 준공예정일 : 79.12.30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7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생략)
8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생략)

토지의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규정에대한관계인의주소·성명

소 재 지	지 번	지 목	지 적(㎡)	소 유 자	
				주 소	성 명
강남구성내동	328-1	잡	545	강남구성내동 108-4	영 파 학 원
〃	327-1	전	366	강남구성내동	한 양 직 물
〃	326-1	〃	2,594	강남구성내동 108-4	영 파 학 원
〃	323	잡	100	〃	
〃	324	전	1,040 중 1,039	〃	
〃	321-4	〃	833 중 821	〃	
〃	328-6	잡	396 중 300	〃	
〃	327-6	전	107	강남구성내동 321-7	한 양 직 물
〃	326-4	〃	907 중 796	강남구성내동 108-4	영 파 학 원
〃	327-5	〃	467 중 231	〃	
〃	326-5	〃	719 중 70	〃	
〃	321-26	〃	233 중 30	〃	
〃	326-3	〃	223 중 214	〃	
〃	328-7	잡	946 중 714	〃	
〃	1-223	도로	470	서 울 특 별 시	
계	15 필지		8,397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89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·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17호(79.5.19)로 시설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64호(79.6.20)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(학교·도로)를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26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(77.3.16)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1과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. 4.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사업시행지 :
강남구풍납동 165번지 일대
2. 사업종류 및 명칭 :
도시계획사업(학교·도로)
서울풍납국민학교 신설
3. 사업규모 및 면적 :
A = 15,782 ㎡ (4,114평)
4.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: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 육 감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가.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즉시
나. 준공예정일 : 착수일로부터 2년
6.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·지목·지적·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(별첨)
7.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(별첨)

토지의소유자와토지수용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·성명

소 재 지	지 번	지 목	지 적(㎡)	소 유 자	
				주 소	성 명
강남구풍납동	170	전	993	서 울 특 별 시	
〃	168 - 1	〃	116	서 울 특 별 시	
〃	168 - 3	〃	325	동선동 5가 58	이광순외 1인
〃	169 - 4	〃	505	〃	
〃	168	〃	2,374	서 울 특 별 시	
〃	169 - 2	〃	1,814	서 울 특 별 시	
〃	166	〃	2,165	서 울 특 별 시	
〃	169 - 1	〃	329	서 울 특 별 시	
〃	165 - 6	〃	4,158	서 울 특 별 시	

소 재 지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소 유 자	
				주 소	성 명
강남구풍납동	165-5	전	438	서울특별시	
〃	165	〃	642	〃	
〃	166-4	〃	235	동선동 5 가 58	이광순외 1 인
〃	166-3	〃	799	동선동 5 가 58 삼선동 4 가 40-2	이광순 이신배
〃	166-1	〃	484	성북구삼선동 4 가 9	홍병표
〃	163-2	〃	405	중구충무로 1 가 22-5 주식회사 유신사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90 호

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 정류장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 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. 4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지적승인내역

구 분	시 설 명	위 치	규 모	비 고
기 정	여객자동차정류장	마포구망원동 478-10	1996 ㎡	
변 경	〃	〃	660 ㎡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91 호

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및결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미관지구를 도시계획 도로신설 및 변경 결정된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 ('77.3.16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및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1979. 9. 5

서 울 특 별 시 장

o 미관지구 변경 및 결정조서

구분	종별	연장 (m)	면적 (㎡)	위치	비고
기정	2	6,000	180,000	외주로2가 - 제2한강교	양측 15 m
변경	2	6,000	195,000	(동교동 - 제2한강교간)	양측 20 m 동교동 - 제2한강교간구역조정
기정	4	1,030	24,720	종합터미널 - 서초동	양측 12 m
변경	3	2,600	104,000	종합터미널 - 남부순환도로	양측 20 m (아파트지구제외)
신설	2	80	3,200	노량진수원지건너편 - 터널입구가각	(구역변동) 양측 20 m
신설	4	3,470	104,100	노량진터널입구가각 - 봉천동 로타리	양측 15 m (터널제외)

※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92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339호(79.7.27)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용지에 대하여 동사업(학교)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건설부 고시 제41호(77.3.16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. 5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도동 산 65-61 외 7필지

나. 사업의 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(학교) 서울신상도국민학교

다. 사업규모및면적 : 14,972 ㎡

라. 사업시행자 주소.성명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착수 : 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 준공 : 1981. 9. 30.

바. 토지의소재지 지번, 지목,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
사.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

아. 위치 및 평면도 : 별첨 (생략)

토 지 조 서

소재지	지 번	지목	지 적	소 유 자	소유권이외권리
관악구 상도동	산65-61	임	2,050 ㎡	대구시중구동인동 4가444-2 이효성외 3인	조흥은행외 4건 근저당
	-109	〃	6,010 ㎡	성북구삼선동5가 23-1 김정철외3인	〃
	-118	〃	50 ㎡	〃	〃
	-107	〃	2,403 ㎡	〃	〃
	-142	〃	661 ㎡	용산구이태원동255 홍원표외 5인	〃
	-110	〃	2,806 ㎡	성동구행당동322-55 이주만	〃
	-59	〃	80 ㎡	관악구상도동206- 김익중	
	-106	〃	912 ㎡	성북구삼선동5가 28-1 김정철 성북구동선동2가 135 최지하 중구을지로 2가 101-17 이병[illegible]	〃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93호

도시계획 사업 (인왕아파트지구조성사업) 및 지적 (공공시설용) 결정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6호(79.5.15)로 도시계획사업(인왕의 주택지조성사업) 및 지적(공공시설용) 변경 결정된 다음의 [illegible]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 [illegible] 제 [illegible](77.2.16)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9.9.6.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사업및시설변경 지적승인 조서

구분		위치	면적 (㎡)		비고
당초	변경		당초	변경	
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공용의 청사	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	강남구서초동 일대	100,000	90,000	공용의청사 변경(제척)

별첨 (도면 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394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인가및건축계획승인

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 처분 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 제248호(79.7.20)로 공람한바 있는 신당1구역에 대하여 의견서 심사후 일부 계획변경하고

2.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건축법 제33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건축계획을 승인한다.

3. 고시내용

가. 관리처분계획

서울시청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시민홀 및 주택과에 관계도서를 비치 열람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함.

나. 건축계획

(1) 건축물의 규모

구분	층수	건축면적 (가구당)	건폐율	용적율	비고
단독주택	2층	500㎡이상	50%이하	200%이하	단독지정지에 한함 (존치제외)
〃	3층	〃	35% 〃	150% 〃	단 100평이상 단독필지는 연립주택 기준에 준함.

(2) 건축물의 높이

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 규모의 층수로하되 높이 제한에 관한사항은 건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규정을 적용한다.

(3) 건축물의 모양

건축물의 평면은 구역전체 경관조성에 적합한 형으로 하며 지붕은 박공 및 모임형으로 하여야 한다.

(4) 건축방법

주민자력에 의하여 당시 지정업체로 하여금 건축함.

(5) 건축기간 및 합의기간

건축기간 : '79.9.1 - '80.8.30

(단, 합의는 '79.9.30 까지)

(6) 기타 사항은 동구역 건축계획 승인서와 건축법 및 관계법령 준용함

1979. 9. 6

서 울 특 별 시 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95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656호('78. 12.15)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('77. 3.16)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 급	류 별	번호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
신설	소 로	2	1	8	520	종암동 70 - 1	종암동 3 - 551
〃	〃	〃	2	〃	260	〃 59 - 8	〃 78 - 67
〃	〃	〃	3	〃	150	〃 79 - 182	〃 82 - 22
〃	〃	3	4	6	610	〃 55 - 10	〃 20 - 5
〃	〃	〃	5	〃	90	〃 78 - 82	〃 62 - 35
〃	〃	〃	6	〃	150	〃 70 - 74	〃 79 - 5
계					1,780		

*별첨 도면표시와같음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96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및변경

1. 당시 도시계획 관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('77.3.16)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 계획1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. 7

서 울 특 별 시 장

○ 도시계획시설(학교)변경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기정	온수국민학교	영등포구온수동8-1일대	16,390 (4,958평)	
변경	〃	영등포구온수동산1-2일대	24,335.8 (7,361.6평)	2,403.6평
신설	금성국민학교	동대문구면목동180-8일대	9,087 (2,748.7평)	

※ 범칙도면생략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97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 고시제198호('71.4.7)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 제26조 및 건설부 고시 제41호('77.3.16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9. 9.10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사업시행의위치 : 도봉구 방학동 304번지의1~도봉구상계동567번지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방학동~상계동간도로신설공사(도로)
3. 사업규모 : 폭 : 30미터
   연장 : 1,430미터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착수및준공예정일 : 인가일~79.12.31

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토지조서

토 지 조 서

번호	소재지	지목	지적	소유자 주소	소유자 성명
1	상계동 853-2	답	522	상계동 996	서 학 석
2	〃 852-3	하천	700	〃	윤 광 복
3	〃 852-1	답	250	〃	〃
4	〃 851-1	전	265	도봉동 259	황 병 준
5	〃 855-27	하천	136	〃	윤 광 복
6	〃 855-54	답	300	중화동 309-74	나 익 규
				면목동 497-1	홍 현 용
7	〃 850-1	〃	949	도봉동 259	황 병 준
8	〃 850-3	〃	21	〃	〃
9	〃 816-1	〃	513	상계동 471	장 태 산
10	〃 849-3	〃	676	상계동 1117	김 길 태
11	〃 848-3	〃	1,200	용두동 231-16	염 완 길
12	〃 847-8	〃	831	중화동 22	이 한 기
13	〃 847-10	전	579	도봉동 394	정 경 근
14	〃 845-4	〃	426	도봉동 434	변 길 수
15	〃 846	〃	432	상계동 1116	윤 석 순
16	〃 844-6	〃	680	미아동 10	김 만 원
17	〃 843-6	〃	1,278	화양동 8-86	배 종 학
				교북동 1-28	이 윤 희
18	〃			북가좌동 202-375	하 한 봉
18	〃 843-10	〃	77	공능동 382-2	〃
19	〃 842-5	〃	825	상계동 1013	성 명 수
20	〃 842-12	〃	566	휘경동 269-26	김 태 산

번호	소재지	지목	지적	소유자 주소	소유자 성명
21	상계동 833-20	전	426	상계동 582	이근배
22	〃 833-2	〃	500	수유동 119-11	강범대
23	〃 833-14	〃	650	석관동 199-4	황화백
24	〃 841-8	〃	625	신당동 52-4	이대용
25	〃 841-2	〃	333	훈정동 63-42	강익수외 1인
26	〃 840-7	〃	932	신문로 2 가 49	양병활
27	〃 569-2	〃	593	청량리동 206-7	황임례
				포천군가방면축리 10	안근호
28	〃 567-6	〃	808	마장동 518-3	최광식
29	〃 568-2	〃	446	이문동 288-23	양병활
30	〃 567-8	〃	615	영등포구분동 127	김연희
31	〃 567-9	〃	62	청량리동 427	최경찬
32	〃 566-6	〃	525	방학동 403	권봉근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98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171호, 184호에 의거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('77 3.16)권한 위임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 9.10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중로	2	99	15 m	1,200	홍은동 48	홍제동 286	
변경	〃	〃	〃	15 m	〃	〃	〃	홍제동 286 일대위치변경
기정	소로	3		6 m	38	홍제동 123	홍제동 124	
변경	〃	〃		6 m	36	〃	〃	122 번일대 위치변경

※ 별첨도면표시와같음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99 호

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지적승인

1. 서울시고시제 13 호(79.1.12)및 제 168 호(79.4.24)에 의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에 대하여 도시계획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 호(77.3.16) 권한 위임 사항에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9.10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지적승인 조서

연번	구분	시설명	폭원	연 장	기 점	종 점
1	신설	하수도	0.8	305	북가좌동 40-33	북가좌동 39-3
2	〃	〃	1.2	324	〃 88-7	〃 36-55
3	〃	〃	0.45	100	남가좌동 185	남가좌동 184-10
4	〃	〃	0.6	76	〃 322-18	〃 322-32
5	〃	〃	1.2	267.5	〃 346-17	〃 330-15
6	〃	〃	0.7	418	〃 344-19	〃 330-14
7	〃	〃	0.45	547	〃 344-30	〃 329-7
8	〃	〃	0.6	289	홍은동 396-16	홍은동 395
9	〃	〃	0.6	583	홍제동 361-32	홍제동 334-96
10	〃	〃	1.5	135	〃 318-18	홍제동 167-25
11	〃	〃	0.6	209	북아현동 124	북아현동 115-20
12	〃	〃	0.4	181	〃 156-37	〃 154-4
13	〃	〃	0.7	74	홍제동 287-104	홍제동 287-50
14	〃	〃	0.7	52.5	북아현동 1-251	북아현동 1-348
15	〃	〃	0.5	48	연희동 231-3	연희동 69-3
16	〃	〃	0.8	738	충정로 50	충정로 184-12
17	〃	〃	0.7	106	〃 120-26	〃 134-1
18	〃	〃	0.5	6	〃 31-1	〃 31-64
19	〃	〃	0.7	10	남가좌동 5-221	남가좌동 5-207
20	〃	〃	0.5	5	〃 5-253	〃 5-251

연번	구분	시설명	폭원	연장	기점	종점
21	신설	하수도	0.5	15	북가좌동 115-9	북가좌동 116-7
22	〃	〃	0.5	21	남가좌동 185-1	남가좌동 162-1
23	〃	〃	0.5	12	〃 124-45	〃 124-77
24	〃	〃	0.7	18	북가좌동 61-34	북가좌동 58-9
25	〃	〃	0.7	9	〃 72-3	〃 산 12-43
26	〃	〃	0.7	60	〃 133-1	〃 83-3
27	〃	〃	0.7	80	〃 산 4-10	〃 산 5-20
28	〃	〃	0.8	366	현저동 102-24	현저동 102-2
29	〃	〃	0.5	131	〃 107-68	〃 102-137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.

◎서울특별시고시 400호

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마포공단 이전 적지에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공용의청사)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('77.3.16)의 권한 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,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9.11

서 울 특 별 시 장

○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공용의청사	영등포구구로동 569-3	323	동 청 사
〃	〃	강남구문정동 229-6	852	〃
〃	〃	동대문구면목동 138-23	774.9	〃
〃	〃	성동구구의동 253-23	436.8	소방파출소
〃	〃	도봉구방학동 42-2	3,363	부녀복지관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01 호

광견병예방주사실시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함을 동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979.9.11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실시목적 : 광견병예방
2. 실시지역 : 서울특별시전역
3. 실시대상 : 개
4. 실시기간 : 79.9.20 - 79.10.20
5. 기타사항 : 본 기간중에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은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 10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살등 필요한 처분을한다.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95 호

환지계획변경인가및
환지예정지지정공고

1. 서울특별시공고 제 172 호(79.5. 23)로 환지계획 공람공고한 영동제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아파트지구내 일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 하였기 공고합니다.
2. 환지예정지 변경 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한다.

1979.9.3

서 울 특 별 시 장

(환지예정지변경지정내역)

가. 사 업 명 : 영동제 2 토지구획정리사업
나. 변경면적 : 12,398.4 평
다. 변경위치 : 강남구청담동 44 번지 외 30 필지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96 호

동청사위치변경공고

서울특별시 일부 동청사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고한다.

1979.9.

서 울 특 별 시 장

o 위치변경내용

동 명	위치변경내용		이전일자
	이 전 전	이 전 후	
반포제2동	강남구반포동한신공영3차29동지하	염동1지구1공구21부터5호나	79.8.6
신 사 동	강남구신사동강남상가2층	강남구신사동246-6	79.9.1
일 원 동	강남구수서동449-5	강남구수서동643	79.9.1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97 호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)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제168호(79.4.24)로 고시된 장위동 지내 하수도공사 구간내 저촉되는 토지의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관련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7.
서 울 특 별 시 장

공람개요

1. 사업장의위치 : 성북구장위동 234-11 ~장위동225의 50호
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장위동 지내 하수도공사
3. 사업규모 :
   가. 하수도암거 1.5×1.5 L=160
   하수도암거 1.5×1.8 L= 30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 :
   79.10.10 - 5.18.
6.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:
   별첨토지조서.
7.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

공 사 토 지 가 격 조 서

1979. . . 사정

번호	소 재 지	지목	수용면적	산술평균치	사정		소유자	
					단가	금액	주 소	성 명
1	장위동283의1	구거					대한민국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98 호

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8 호 (79. 4.24) 로 고시된 정능 4 동 285 주변 하수도 공사 구간내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관련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7

서 울 특 별 시 장

공람개요

1. 사업장 위치 : 정능 4 동 967 의 83 - 281 의 2 간
2. 사업의 종류 또는 명칭 : 정능 4 동 285 주변 하수도 공사
3. 사업규모 : 암거 (2 × 2 × 2 련) L = 19.5
   암거 (3.5 × 3.5) L = 56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 : 79.2.5 - 5.31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 토지 조서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

공 사 토 지 가 격 조 서

1979. . . 사정

번호	소재지	지목	소유자	
			주소	성명
1	정능 4 동 976 의 87	구거	대 한 민 국	
2	정능 4 동 966 의 1	〃	〃	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99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5 호 (78. 12.22) 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도봉구 수유동 산 129 번지 한국신학대학교 부지 정지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항 및 제 85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

과 같이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9.5

서 울 특 별 시 장

다 음

1. 사업시행지 -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산 129 번지
2. 사업의 종류 - 도시계획사업 (학교) 한국신학대학교 (부지정지공사)
3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- 2,762 (836 평)
4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- 서울특별시 수유동 산 129
   학교법인 신학대학 이 준 묵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- 79.3.16 ~ 79.8.27
6. 준공도면 - 생략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02 호

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건축계획 및관리처분계획공람공고

1. 서울시고시 제 380 호 (79.8.28)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된 연희 3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42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 조 및 건축법 제 33 조의 제 2 항 규정에 따라 동 구역 관리처분계획에 부합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일로 부터 30 일간 공람에 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주택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다.
3. 공 고 내 역

지 구 명	위 치	계획면적	계획수립내역
연희 3 지구	151 ~ 186 번지일대 561 ~ 695 〃	50,841 평	1. 지번별조사 및 도면생략 (개별통보) 2. 건축계획서 (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 비치)

1979.9.6

서 울 특 별 시 장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03 호

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
및환지예정지지정공고

1. 서울특별시 도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7 호(79.8.6)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 조에 의거 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 56 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한다.
2. 환지예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9.6

서 울 특 별 시 장

사 업 개 요

가. 사업명 : 도봉토지구획정리사업
나. 변경위치 : 도봉구 도봉동282-60 번지외 77 필지
다. 변경면적 : 9,640.3 평
라. 변경도서 : (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05 호

공인신조 사용승인 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79.9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공인명 : 도봉구 도로수익자 부담금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인
2. 사용개시일 : 1979.9.10
3. 공인의 인영 :

인영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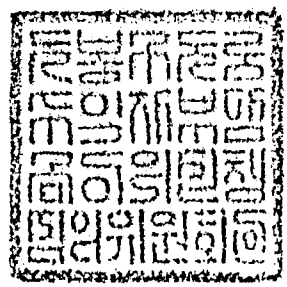
공인명	도봉구도로수익자부담금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인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06 호

공인신조 사용승인 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79.9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공 인 명 : 김포수원지, 사무소장인
2. 사용개시일 : 1979.9.10

3. 공인의 인영

인 영		인 영	
공인명	김포수원지사무소장인	공인명	김포수원지사무소계인